

의안번호	2208985
의 퇴 인	김용만의원
회 답 일	2025.4.2.
추계번호	25D1584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제1호 (정의)	청년의 연령 상한을 “34세”에서 “39세”로 상향 조정하면서, “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”고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제1호 (정의)	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별 수혜대상의 증가분, 재정투입 또는 조세 특례 단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임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고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-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별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청년지원 및 청년정책”의 수혜대상과 사업규모도 확대하는 경우, 조세특례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정책지원에 따른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주요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

법령/정책		연 령	조세 특례 제한법	법령/정책	연 령	
청년기본법		19세~34세		청년창업중소기업	창업 시 15세~34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	
통계청(청년실업률)		15세~29세			청년상시근로자	15세~29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
청년고용 촉진 특별법	법률	대통령령 위임			청년 정규직 근로자	15세~34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
	시행령	원칙: 15세~29세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: 15세~34세				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	법률	대통령령 위임			청년 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)	15세~34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
	시행령 (청년상인)	39세 이하	청년 (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)	19세~34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		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)		15세~34세	지방세 특례 제한법	청년창업기업	창업 시 15세~34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	
중소기업 창업 지원법	법률	39세 이하 (청년창업기업, 예비청년창업자)		청년근로자 (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)	15세~29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	
				청년상시근로자	15세~29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	
고용보험법 시행령 (청년실업자)		15세~34세		청년 (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)	15세~34세 (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)	

자료: 국무조정실

[표 2]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

지역	연 령	관련 조례	지역	연 령	관련 조례
서울	19세~39세	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	강원	18세~45세	「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
부산	18세~39세	「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	충북	19세~39세	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
대구	19세~39세	「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	충남	19세~39세	「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」
인천	18세~39세	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	전북	18세~39세	「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
광주	19세~39세	「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」	전남	18세~45세	「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」
대전	18세~39세	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	경북	19세~39세	「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」
울산	19세~39세	「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	경남	19세~39세	「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」
세종	19세~39세	「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」	제주	19세~39세	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
경기	19세~39세	「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」			

자료: 국무조정실

-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은 현행법과 개별법률을 근거로 2024년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등 5대 분야 총 356개 과제를 대상으로 27조 4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

[표 3]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관리과제 현황: 2023~2024년

분야	과제수	청년예산(억원)		
		2023년	2024년	(비중,%)
I. 일자리	124	57,731	58,854	21.7
II. 주 거	28	104,201	115,911	42.9
III. 교 육	117	69,402	75,378	27.9
IV. 복지·문화	44	19,531	19,083	7.0
V. 참여·권리	43	888	1,233	0.5
※ 기타(非청년정책 등 제외)		2,425		
합 계	356	254,178	270,459	100%

자료: 「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 (2024.03.29.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별법률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별 수혜대상의 증가분, 사업별 재정투입 또는 조세특례 단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임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II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